

강원도립대학교 교수회 운영규정

(제정) 1998-03-31 규정 제004호

(개정) 2009-05-18 규정 제204호
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
(개정) 2016-10-20 규정 제42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 교수회(이하 “교수회”라 한다.)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4.25.>

제2조(정의) 본 교수회는 대학 내의 모든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

제3조(조직) 본 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, 간사 1명을 둔다.

제4조(회의 소집과 심의) ① 본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교수회를 소집,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.

② 본 회의는 재적교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 및 연구
2. 학생지도
3. 장학 및 후생
4.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
5. 기타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6조(기타) ① 삭제<개정2016.10.20.>

② 본 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부 칙(1998. 3. 31)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5. 18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5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10. 20.)

이 개정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